

보도시점 2025. 6. 30.(화) 석간 배포 2025. 6. 29.(월)
2025. 6. 30.(화) 06:00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23년 만에 장애유형 신설

- 췌장장애 유형 신설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일 시행 -
- 장애인전형 입시·취업을 위한 「우선심사 제도」 운영-
- 심장장애·간장애·장루요루장애 등 내부장애 등록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내부장애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췌장장애 유형 신설은 2003년 5개 장애유형을 신설한 이후 23년 만이다.

* (88년, 5개 유형)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 (00년, 10개 유형) 뇌병변·정신·자폐·신장·심장 + (03년, 15개 유형)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 (26년, 16개 유형) 췌장

이번에 새롭게 인정되는 췌장장애는 당뇨병 중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므로 장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신설하였다. 등록 이후 췌장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접수, 소득수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췌장장애 신청인을 위해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췌장장애 등록 신청 시에 주민센터에

‘고3 재학증명서’,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심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은 심장·간·장루요루·호흡기 등 내부장애 관련 등록 기준도 완화하였다.

<참고> 내부장애 기준 완화 주요 내용

- (심장) 관련 질환 확대, 폰탄수술 받은 경우 심하지않은 장애에 추가 등
- (호흡기) ‘기관절개술 및 24시간 인공호흡’의 경우 6개월 경과 후 장애진단 가능
- (간) 흉수, 흉막염, 문맥고혈압성 출혈 등 고려하여 합병증 범위 확대
- (장루요루) 장루요루 복원 이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경우 장루장애 인정 등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해당 학회 등에 ‘취장장애 등록 시행 및 내부장애 기준 완화’와 관련한 장애 기준 및 진단 방법 등의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개정된 장애기준에 따라 해당 환자에 대한 장애 진단 및 안내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당부하였다.

장애인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 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방정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의 장애정도심사를 전담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공단은 심사 체계 정비와 직원 교육을 완료하고, 신청인이 불편 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의 경우 이제 취장장애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 취장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질의응답
2. 책장장애 홍보물

- <별첨> 1.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2. 책장장애 등록 및 진단 가이드라인
3. 책장장애 진단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
4.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안 전문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044-202-3280)
		담당자	사무관	두유림 (044-202-3299)
담당 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책임자	부 장	오영식 (063-713-7001)
		담당자	차 장	유자영 (063-713-7025)



1. 7월 1일부터 모든 당뇨병 환자가 장애인등록 가능한가요?

- ‘췌장장애’는 당뇨병 중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한 당뇨병만 해당됩니다.
- 췌장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췌장장애로 진단 받아야 하는데, 췌장장애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①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하고, ②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췌장장애는 다른 장애유형과 마찬가지로 원인 질환의 진단과는 구별 되므로, 당뇨병 진단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세 기준과 요건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췌장장애 등록은 1형 당뇨병만 가능하고 2형 당뇨병은 제외되는 건가요?

- 췌장장애의 원인질환이 1형 당뇨병인지 또는 2형 당뇨병인지와 관계 없이,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췌장장애 진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췌장장애로 진단받고 장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 또한 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췌장장애 진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췌장장애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3. 췌장장애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진료하고 췌장장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췌장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 사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췌장 이식 수술을 받고 췌장장애 '심하지않은 장애'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때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수술기록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 불필요).

4. 췌장장애 진단을 위해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했는데, 전원 전에 받은 검사나 치료도 췌장장애 진단 요건인 '검사' 및 '6개월 인슐린 치료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전원 전에 진료하고 검사한 의사는 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아니셨습니다.

- 전원 전에 치료나 검사한 의사가 (내과 내분비대사분과 전문의나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의사나 일반 의사인 경우에도, 전원 후에 진단하는 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췌장장애 진단 요건인 '검사' 및 '6개월 인슐린 치료'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췌장장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췌장장애 진단을 하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으로 전원 전에 실시된 치료나 검사가 진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원한 병원에서 췌장장애 진단을 위한 치료 및 검사를 새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5. **취장장애 진단을 위한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은 기준 일이 언제인가요?**

- 진단일(진단서발급일)이 기준일입니다.
 - 진단일 직전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자동인슐린 주입기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1. 저는 고3학생인데, 취장장애로 등록이 되면 올해 대입에서 장애인 전형으로 응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장장애인 등록을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2. 저는 지금 취업 준비 중이라 취장장애로 등록되면 장애인 전형으로 취업하고자 하는데 장애인등록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 취장장애를 신청하는 경우 '26년 12월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입 또는 취업 관련 우선심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때 고교 또는 대학 재학·졸업(예정)증명서나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워크넷 구직등록확인서, 면접확인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증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우선심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 보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의 장애심사 소요기간을 15일 이내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STEP 01 | 장애진단

주치의와 상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발급

STEP 02 | 장애인등록 신청

신청인이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STEP 03 | 장애심사 요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 실시 (의학전문위원을 통해 장애정도 결정)

STEP 04 | 장애심사 결과 통보 및 장애인등록

국민연금공단에서 읍면동으로 장애정도심사 결과 통보 장애정도심사 결과 반영하여 장애인등록 및 통지 장애인등록 결과 통보시 이력산정(공단), 행정심판(지자체)

취장장애 등록 후 이용가능 서비스

주요 장애인 복지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 경우), 장애수당(소득기준 충족 필요), 장애인의료비 지원(소득기준 충족 필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 * 다만 취장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은 심한 장애이면서 중증장애인 경우 수급 가능, 장애인주차표지 및 돌봄키 어용 대상 아님(*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요금 감면 등 서비스

- (공과금 등 감면)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유선통신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지하철 요금, 국공립 공원 등 입장료
- (세제 혜택) 소득공제(연말정산), 자동차취득세, 상속증여세 등 감면
- (우선권 등 인정) 공공주택 특별분양, 어린이집 우선 입소(자녀 형제자매), 대학입시 장애인전형, 장애인 일자리 등



국번없이 129

국번없이 1355

112



2026년 7월 1일
취장장애 등록이 시행됩니다.



취장장애는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취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취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분비되지 않아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경우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

1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사용

2 혈액내 포도당 농도 140mg/dL 이상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C-peptide 0.6ng/mL 미만

(2) 당화노 C-peptide/Creatinine ratio 0.2 nmol/mmol 미만

2 취장을 아식받은 경우

취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관련 진료기록 및 확인서류로 신청 가능

핵심 장려: 인슐린이 거의 나오지 않음, 장기간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 필요, 혈당 조절이 어려움, 검사에서 취장 기능 저하 확인, 취장 이식을 받음

단순 당도가 아니라 취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인자가 중요합니다.

취장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취장장애 등록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 01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발급가능한 진단서
 - ① 장애인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내분비내사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
 - ② 해당이식을 시술했거나 진료 중인 의료가 권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 02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
 - ① 최근 6개월 이상 인슐린치료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인슐린 용량, 주기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 ② 진단명, 수술명, 병력, 치료내역, 약물 처방 및 장애상용에 대한 기재 필요
- 03 검사자료
 - ① 비공백 혈액(혈청, 혈장) 포도당 검사 결과자 140mg/dL 이상
 - ② C-펩티드 검사 또는 당화노 C-펩티드/크레아티닌 검사 결과지
 - ③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검사자료 제출 (3개월 내 실시한 경우 2차 불응형 하고 2회 모두 진단기준 충족)
 - ④ 원칙적으로 항체검사 결과지는 불필요. 다만 기존의 자가항체 검사 결과(2중 이상 양성)가 있는 경우 제출 가능
 - ⑤ 자기항체 예시: GAD항체, IA-2항체, ZnT8항체, IA항체 등

취장장애 인정 기준
심한 장애인
혈당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인 경우 이하 동시에 측정된 (1)C-peptide가 0.6ng/mL 미만 또는 (2)당화노 C-peptide/creatinine ratio가 0.2nmol/mmol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고,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인
취장을 아식받은 사람